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17
----------	-------

발의연월일 : 2026. 4. 1.

발 의 자 : 강대식 · 김장겸 · 구자근
김기현 · 이인선 · 강선영
서천호 · 김은혜 · 임종득
정점식 · 강명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이·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미용사 또는 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6항 및 제6조의2제11항·제12항 신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공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공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공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